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1,184,428	22,535,533
일반회계	726,434,517	21,793,036
특별회계	24,749,911	742,497
공기업특별회계	11,291,487	338,745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1,291,487	338,745
기타특별회계	13,458,424	403,75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0,100	1,20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90,050	2,70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73,901	29,217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87,920	5,638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649,593	19,488
수질개선 특별회계	9,513,972	285,419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002,888	60,087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25,80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